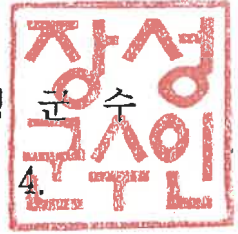


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

의안 번호	제2155호
----------	--------

○ 제안자 : 장성

○ 제출일자 : 2026. 4.



1. 제안이유

- 『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』 제10조의2제3항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정 사항
- 이에,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 취득·처분 계획 : 취득 1건(건물 1)

(단위 : m², 천원)

유형	사업명	소재지	면적	재산가액	비고
계	1개 사업		2,697.98	14,000,000	
건물	첨단3지구 다목적 체육관 기부채납	진원면 산동리 544-30 일원 (근린공원 1)	2,697.98	14,000,000	

3. 공유재산 관리계획

(단위 : m², 천원)

구분	필지수 / 동수	면적	재산가액	비고
계	1필지 / 1동	2,697.98	14,000,000	
취득 건물 (기부채납)	1동	2,697.98	14,000,000	지상 2층

4. 법적근거

-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제7조, 제10조의2,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『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』 제5조, 제12조 및 제15조

- 붙임 1.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1부.
2. 2026년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.
3. 사업계획서 각 1부.

첨단3지구 다목적체육관 기부채납

첨단3지구 내 근린공원 1에 건립되는 다목적체육관을 공유재산으로 취득 (기부채납)하여, 첨단3지구 입주예정자와 인근 주민의 체육·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복리 및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6. 4. ~ 12.
- 위 치 : 진원면 산동리 544-30 일원(근린공원 1)
- 면 적 : 2,697.98㎡(대지면적 68,225㎡)
- 규 모 : 지상2층 - 1F(체육관, 기계실), 2F(다목적실)
- 체육시설 : 배드민턴 4면, 농구, 체력단련실 등
- 사 업 비 : 140억원
- 시행주체 : (주)광주첨단3피에프브이

□ 재산취득/처분 내용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재산의표시	면적	재산가액 (공시지가 등)	취득사유
건물취득	1동(지상 2층)	2,697.98	14,000,000	건물 기부채납

□ 기대효과

- 첨단3지구 입주예정자와 인근 주민의 체육·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복리 및 문화생활 증진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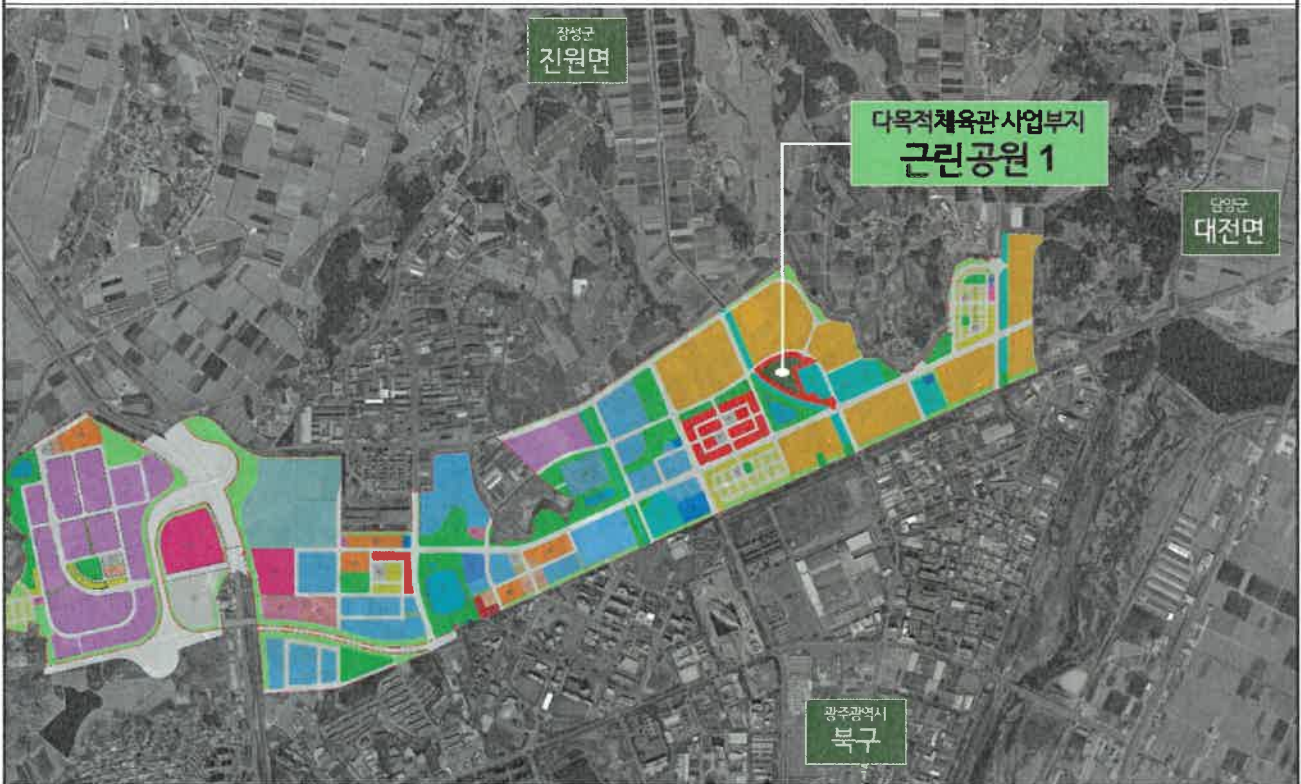
□ 향후 계획

- 행정절차 이행(인허가 등) : 2026. 4. ~ 5.
- 건축공사 : 2026. 5. ~ 12.

□ 부지현황



사업부지 전경



사업부지 위치도